

태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낙태법 개정을 위한 신학적 분석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 입법과 기독교 가치 반영의 문제
- II.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주문
- III. 현재의 인간관과 태아의 지위 이해에 대한 분석
- IV. 태아의 신분에 대한 성경 해석학적 논쟁과 검토
- V. 인간, 태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 검토
- VI. 낙태법 개정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과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태아의 신분을 신학적으로 규명하여 한국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죄로 간주하고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왜냐하면 현재 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희생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을 개정해서 이 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아울러 여성의 자기 행복추구권을 함께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논문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인간 이해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태 밖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한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기능론적 인간 이해가 지닌 문제를 철학적으로 비판한다. 이어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임을 신학적으로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인간의 존엄한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해 왔다. 만약 태아가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태아도 인격체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논문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분석하여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임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형법을 기독교적 가치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몇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키워드: 태아, 태아의 신분,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 기능주의적 인간관, 실체론적 인간관

논문투고일 2023.07.31. / 심사완료일 2023.09.01. / 게재확정일 2023.09.05.

I. 서론: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 입법과 기독교 가치 반영의 문제

1. 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현재

2019년 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의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 즉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의사가 낙태 시술하는 것을 처벌하는 ‘의사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을 2020년 말까지 헌법 정신에 합치되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입법부의 입법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10월에 이르자 법무부가 먼저 정부 입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11월에 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조해진 국회의원들이 대표로 각각 형법 일부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개정 시한을 넘겼고, 2023년 8월 현재 아직도 이 안들은 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한국 사회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실효적 법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2. 기독교시민단체와 교회의 흐름

헌재가 선고를 내린 이후 사회적 여론은 환영과 우려로 양분화되었다. 여성 인권 단체를 비롯한 여러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 반면, 종교계와 여러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것을 우려하면서 이 결정을 비판하였다. 그중에서도 기독교 교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낙태죄가 폐지 내지 완화되면, 앞으로 낙태가 늘어날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교계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기독교가 이렇게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소위 ‘낙태법’이라는 이 형법 조항은 일반 재산과 주거 등에 관한 민법

조항들과는 달리 복중(腹中) 생명에 관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는 기독교 교회로서는 이 낙태법 개정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여러 다양한 매체들 또는 세미나와 모임들을 통해 교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피력하는 것과 아울러 이것이 낙태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다. 적잖은 기독교시민단체들과 목회자들의 문제 제기와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23년 하반기 현재,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은 총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논문의 목적과 연구 초점 및 범위

소위 낙태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개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독교계는 생명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독교 의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법조인들의 식견을 잘 참고하고 종합하여 기독교적인 안을 마련해서 이 안이 개정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이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쓰여지는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태아의 신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검토를 통해 교회와 기독교시민단체들에게 낙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적 기준에 덜 부딪히는 법을 제정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이 논문은 연구의 초점을 사람의 인격(성), 그리고 그것의 기독교적 이해의 핵심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태아와 하나님의 형상 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여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태아의 신분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낙태, 즉 태아 생명 종결이 지니는 성격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어 낙태법 개정 문제에 기독교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시민단체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작업을 기독교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되는 공공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회와 시민단체가 취해야 할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과 같은 것은 이 논문에서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현재의 주문과 주문을 이끌어 낸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 판결을 내린 다수 재판관들의 판결 근거와 결정요지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정 기간의 태아를 가리켜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다수 재판관들의 인간과 태아의 지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이어서 기독교 교회가 고백해 온 인간론의 핵심 명제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의미에 대해 신학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태아의 지위를 신학적으로 검토하되, 태아와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집중 검토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태아 낙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개정안들은 간단히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파악하고, 이어서 기독교적 기준에 근접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민단체가 해야 할 작업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할 것이다.

II.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주문

1. 현재 판결의 핵심요지와 분석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 1항의 ‘자기 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1항의 ‘의사 낙태죄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불합치한다.¹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조항이 10조가 천명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1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중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미 공개된 이 판결의 ‘결정요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형법 제269조 1항의 자기 낙태죄 조항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비록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이 형법 조항이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³

현재가 지적한 이 조항이 지닌 핵심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가치의 불균형이다. 국가가 국익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희생하면서까지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되 여성의 행복도 함께 보호하고 여성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현재는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 라는 국가의 공익을 도모하는 일에 일방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여성의 행복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위 ‘자기결정권’이 내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결정의 대상에는 자신의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행 낙태죄 조항들은,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조항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것이다.

2. 개정 주문과 제시된 가이드라인

3 2017헌바127.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B0%94127\)](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B0%94127))

현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국가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내리면서 동시에 다수 재판관들은 결정요지를 공개하였다. 입법부가 앞으로 개정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 결정 요지를 잘 분석하면 태아의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이 임신 이후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국가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즉,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임신 유지 혹은 종결을 전인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충분한 시간은 태아의 특정 자질 혹은 특질과 함께 고려되어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국가는 임신 22주 전후를 기점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차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2주 후의 태아는 비로소 현대 의료가 제공되면 모태 밖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22주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태아에 대해 생명보호의 의미를 달리 부여하여 보호 수단과 정도를 그에 따라 달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이러한 진술은 현재가 갖고 있는 태아의 신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22주 이전의 태아는 아직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존재로 본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태아가 모태 밖에서 생존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태아가 22주를 넘어 “모태 밖 독자 생존능

력”을 갖추면, 태아는 비로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만한 생명체로 인식되고 보호 받을 자격을 지닌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능이 미비된 22주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등치하여 그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III. 현재의 인간관과 태아의 지위 이해에 대한 분석

1. 기능주의적 인간 이해

현재는 22주 이전의 태아와 22주 이후의 태아의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차등적으로 이해한다. 전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성의 행복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이것은 22주의 태아를 일반 사람의 생명 가치와는 다르게 간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현재가 태아를 “생명체”로 표현한 것에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현재가 태아를 인격체라 표현하지 않고 생명체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재판관들이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유보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류사회가 사람은 동식물과는 달리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생명권을 철저히 보호해 왔는데, 그것은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부여받는 것이다.

사람은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이지만 동물이 지니고 있지 못한 자아의식, 도덕의식, 신의식 및 대상을 다스리는 기능과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 등과 같은 독특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인류사회는 사람이 지닌 사람만의 독특성을 ‘인격성’(personhood)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왔다.⁴ 달리 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인격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4 의료윤리학자들은 ‘인간’(persons)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인 사람’(human beings)과는 구별하여 사용한다. ‘person’이라는 영어는 한국어로 주로 ‘인간’으로 번역되지만, ‘사람’, ‘인격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학자들은 ‘person’을 ‘인격(성)(personhood)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

사람은 존엄하며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지닌 독특한 인격성(personhood)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철학적 주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지만 20세기 후반기에 공학과 생명의로 공학의 발달과 함께 생명윤리학과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다시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고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낙태,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말기 환자의 의료제공 문제 등의 생명 의료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생명윤리학자들로부터 제기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격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성이 상실한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인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960년대 이후 의료윤리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대두하면서 이런 인간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인격성(personhood)을 사람이 소유한 ‘독특한 능력’(capacities)이나 ‘기능’(functions) 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이 보유한 능력의 유무가 그 존재의 인격성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기준이나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소위 ‘기능론적 인간 이해’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생명윤리학 연구에 크게 기여해온 신학자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는 1970년대 중반에 “사람됨을 가리키는 네가지 지표들”(Four indicators of humanhood)이라는 생명윤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

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personhood’를 사용한다. 물론, 초기에 플레처라는 학자는 ‘humanhood’(사람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플레처 이후의 대부분의 학자는 ‘personhood’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personhood’를 ‘인격성’으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의료윤리학을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 온 철학자 김상득 교수에 빚진 바 크다. 김상득 교수가 이를 “인격성”으로 번역한 바 있고, 또 다른 기독교윤리학자 김승호 교수도 동일하게 번역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의사이고 의료윤리학자들인 박재현과 이일학은 “사람됨”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격’, ‘인격성’ 혹은 ‘인간됨’, ‘사람됨’ 그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대동소이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Scott Rae and Paul Cox, *Bioethics: A Christian Approach in a Pluralistic A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김상득 역, 『생명윤리학』 (서울: 살림출판사, 2004), 253; Neil Messer, *SCM Studyguide to Christian Ethics*, 김승호 역, 『현대 기독교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217; Gilbert Meilaender, *Bioethics: A Primer for Christians*, 3rd ed. 박재현 · 이일학 역, 『기독교 관점에서본 생명윤리』 (서울: 킹덤박스, 2015), 64.

한 논문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답다고 인정받으려는 최소한 다음의 15가지의 특질 혹은 기능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최소한의 지능 2. 자아인식 3. 자아통제 4. 시간감각 5. 미래감각 6. 과거감각 7. 다른 사람과의 관계능력 8.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9. 의사소통 10. 자기통제력 11. 호기심 12. 변화와 가변성 13. 합리성과 감성의 균형 14. 개체의 독특성(idiosyncrasy) 15. 신피질 기능.⁵ 플레처는 사람이 이런 기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유할 때,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중에 어느 것이라고 그 정도가 현저히 낮으면 인격체로서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기능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능력인 자의식 혹은 자아인식(self-awareness), 관계능력(relational abilities), 행복감(euphoria), 그리고 대뇌피질 기능(neocortical function)이라는 네 가지 기능과 특질을 사람됨 혹은 인격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설명했다.⁶

플레처가 언급한 지표들 중에서 자아인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람이 인격을 지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인데,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길론(Raanan Gillon) 박사는 만약 이런 기준에서 초기 태아를 본다면, 태아는 아직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⁷ 의식이나 의지와 감정도 없이 호흡만 유지하는 뇌사자, 그리고 대뇌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은 인격성(personhood)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생명체일뿐, 인격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가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잠재성의 유무를 통해 인격성을 판단하게 되면, 심한 백치(idiots)나 대뇌기능이 소실된 자, 그리고 심각한 정신분열 환자나 파킨스 병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5 Joseph Fletcher, "Four Indicators of Humanhood," in *On Moral Medicine: Theological Perspectives in Medical Ethics*, eds Stephen Lammers and Allen Verhey (Grand Rapids, Mich.: W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276.

6 Fletcher, "Four Indicators of Humanhood," 275-276.

7 Raanan Gillon, "To What Do We Have Moral Obligations and Why?" in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3rd. edition. eds. Tom Beauchamp and LeRoy Walters (Belmont, Cali.: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165.

이처럼 이와 같은 기능과 특질의 유무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영장류로서의 ‘생명체’(human being)이지만 인격성을 지닌 ‘인간’(person)으로 간주하는 데는 문제가 있게 된다. 학자들과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인간다운 능력과 기능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은 영장류로서의 ‘생물학적 생명’(human biological life)을 지니고 있을 뿐이고 ‘인격적 인간으로서의 생명’(human personal life)을 지닌 사람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윤리학자 레이첼은 전자를 “생물학적 생”(biological life)을 사는 존재로 후자를 “전기적 삶”(biographical life)을 사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그 생과 삶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⁸

헌법재판소도 바로 이런 기능론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뱃속 태아를 이해하기 때문에, 현재는 ‘태아를 인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생명체’라고 표현할 뿐 기본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간으로 표현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이른 때에 태아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모태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능’(viability), 바로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다수 재판관들이 기능론적으로 인격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기능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분석

기능론적 인간 이해가 인간의 독특성과 인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일까? 이 문제에 연구를 많이 한 신학윤리학자 라이와 콕스(Scott Rae and Paul Cox)는 기능론적 인간 이해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⁸ James Rachels, *The End of Life: Euthanasia and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5.

그들은 기능론적 이해는 세탁기나 텔레비전과 같은 ‘속성사물’(屬性-事物, property-things)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를 노정한다고 평가한다.⁹ 예를 들어, 자동차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수 많은 부품들이 결합되어 질서 있게 연동되어 달리고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속성사물이다. 이것은 실체와는 다르다. 실체는 어떤 고유한 내적인 본질을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그 본질로부터 자신이 되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내적 본질이나 원리가 없는 무생물체로서의 개체이다. 속성사물은 비록 그 개체가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해도 이 질서는 내적 본질에 따른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살아있는 생물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인 개체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즉 생물체는 자신 안에 어떤 내적 본질이 내재 되어 있는 살아있는 실체(實體, substances)이다. 실체는 어떤 개체(entities)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총합과는 성격이 다른 자기 자신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제공하는 내적 본질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생물체는 강아지다움을 발현하게 하는 내적 본질(essence)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의 원리에 따라 자라고 그로부터 단계마다 잠재되어 있던 기능이 발현하여 성숙해가는 개체이다. 만약 그런 기능이 발현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상태와 조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의 내적인 본질이 사라지거나 쇠한 것이 아니다.¹⁰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사람이 늙어 병들게 되면 쓸개와 위와 대장 소장과 같은 장기들의 기능들이 병들거나 쇠퇴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위장과 쓸개와 같은 장기의 일부나 전부를 잘라내면 그 사람은 일부 장기의 기능이 없어졌거나 쇠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물체인 실체는 무생물 자동차와 같은 속성사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동차는 차의 정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능을 지닌 부분들의

⁹ Rae and Cox, *Bioethics*, 159-160.

¹⁰ Rae and Cox, *Bioethics*, 161.

총합체이기에, 시간이 지나 부분들이 마모되고 그 기능이 쇠하게 되면 달리고 이동하는 목적을 이행하는 그 속성사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만다. 이와 달리, 생물체인 인간은 내적 본질(essence)을 지닌 실체이다. 그 실체는 시간이 경과해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인간은 실체로서 내적 본질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이다.¹¹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인식력, 관계능력, 통치능력 등이 진보하거나 변한다. 그리고 노화하면서 이 기능들은 쇠퇴하기도 한다. 만약 인간의 인식력, 대인관계능력, 도덕감이 약해지거나 현저히 사라졌다고 하면, 실체의 상태와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이지, 그것을 발현하게 하는 내재적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실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오도나번(Oliver O'donovan) 교수도 인간은 그 자체가 실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은 수정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물학적 혹은 신경학적 능력과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있지만, 그 기능들의 기준으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평가받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보이는 여러 생물학적 지적 능력과 기능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고 발전하거나 쇠하기도 하지만, 인격성 자체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기능이나 지적 기능으로 인격성을 가늠한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인격체가 되는 정확한 지점이나 시점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임의적이고 자의적이 된다. 신학자 피어시(Nancy Pearcey)는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이라기 보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되 정도나 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서 비인격성에서 인격성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과 시점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¹³ 그러면서 이렇게 기능의 소유 여부로 인간과 인격성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접근법은

11 Rae and Cox, *Bioethics*, 162.

12 Oliver O'donovan, "Again: Who is a Person," in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ed. J.H. Channer (Exeter, England: Paternoster Press, 1985), 129.

13 Nancy Pearcey, *Love Thy Body*, 이지혜 역. 『네 몸을 사랑하라』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78-9.

상당히 문제를 많이 노정한다고 평가한다.

살펴본 바대로, 사람이 보유하고 보이는 능력 혹은 기능들의 유무를 통해 사람의 인격성을 이해하려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실체로서의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데이빗 쿡(David Cook) 박사는 사람의 인격성을 생물학적 기능의 유무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이런 인식은 인격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하려는 ‘환원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위험한 시각으로 평가한다.¹⁴ 결론적으로, 사람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인격성은 사람이 소유하는 특정한 무엇이 아니며,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통해 내재적으로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⁵

IV. 태아의 신분에 대한 성경 해석학적 논쟁과 검토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논변을 살펴볼 것인데, 그 논변의 가장 중요한 성격적 근거로 쓰이는 성경 구절의 해석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할 것이다. 낙태 허용론자들은 성경이 태아 생명의 가치를 여성 생명의 가치보다 열등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즉 출애굽기 21장 22-25절에 명시된 모세의 율법이 산모의 생명이 해를 받으면 생명으로 등가 보충하는 벌을 명시하지만, 태아의 생명이 죽으면 생명이 아닌 물질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율법 이해를 근거로 낙태 옹호론자들은 성경이 태아를 아직 인격체가 아닌 혹은 인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생명체로서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성경해석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율법 구절에 대한 옹호론자의 해석과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자.

1. 태아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율법(출

¹⁴ David Cook, *Dilemmas of Life: Deciding what's right and what's wrong* (Leister: Inter-Varsity Press, 1990), 73-74.

¹⁵ Meilaender, *Bioethics*, 33.

21:22-25)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볼 것이니라(22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23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24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5절)”

(1) “다른 해가 있으면”의 피해 주체에 관한 해석

낙태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은 22절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לֹא־יָרָא אִישׁ אֶת־אִשׁוֹ)의 구절에서 “다른 해가 없으면”(לֹא־יָרָא אִישׁ אֶת־אִשׁוֹ)의 주체는 다름 아닌 아이 밴 여인, 즉 산모라고 본다. 이 구절은 여성이 낙태하여 아이는 죽었지만 그 외의 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낙태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사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한다. 그리고 23절의 “다른 해가 있으면”(אִישׁ יָרָא אֶת־אִשׁוֹ)의 주체도 산모라고 본다. 그래서 23절은 만약 산모가 죽게 되면 가해자에게 죽음으로, 산모가 눈이 다치면 가해자에게는 눈으로, 산모가 이를 다치면 가해자에게 이로 갚으라고 규정한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세율법은 산모에게 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동해보복법대로 처리하도록 했고, 이와는 달리 태아가 낙태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산모에게 생명이 아닌 벌금과 같은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율법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복중 태아의 생명 가치는 일반 사람의 그것과 차등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 낙태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타당할까? 다른 검토에 앞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석이 잘못되면 그 주장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22절의 “다른 해가 없으면”(לֹא־יָרָא אִישׁ אֶת־אִשׁוֹ)과 23절의 “다른 해가 있으면”(אִישׁ יָרָא אֶת־אִשׁוֹ)의 주체가 산모라고 했다. 그런데 만약 해를 입은 주체나 대상자가 산모가 아니라 태אי거나

혹은 그 주체가 산모와 태아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낙태 옹호론의 주장은 타당성을 담보 받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해를 입거나 입지 않은 주체가 태아 혹은 산모와 태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 이 율법은 태아의 생명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것을 요구한 법이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구문을 분석하면, 22절과 23절은 “다른 해가 없으면”과 “다른 해가 있으면”에서 해를 당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다른 해가 있으면”과 “다른 해가 없으면”이다. 영어로는 “If there is no serious injury”인데, 문법적으로 볼 때,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 상해를 입은 자로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해를 입게 되는 주체는 태아일 수도 있고 산모일 수도 있다. 이 문장에서는 산모, 아이,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상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울러 태아를 배제할 문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이 구문을 갖고서 모세율법이 태아 생명의 가치를 산모의 그것보다 열등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¹⁷

(2) “낙태케 하였으니” 해석 논란—유산 혹은 조산

“낙태케 하였으니”(22절)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낙태 문제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낙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אצ)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 13차례 나오는데, 12차례는 ‘앞으로 나오다’(to come forth, to come out)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살아서 움직이는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래서 적잖은 학자들은 이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것이 유산이 아니라, 분만 즉 조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싸우던 사람이 실수로 산모에게 충격을 가해서 태아가 갑자기 산모의

16 Peter En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xodu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0), 446.

17 John Frame, *The Doctrine of Christian Life*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2008), 719.

모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 즉 우발적인 충격으로 산모가 조산(premature delivery, NIV)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유산(miscarriage)시킨 것에 관한 형벌 조항으로 모세가 만든 것이라고 하던 그 의미를 지닌 ‘샤콜’(שָׂוֹל), 왕하 2:21, 욥 23:26; 동물의 경우-창 31:38, 욥 21:10:)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이저와 학자들은 22절의 해당 구문을 “낙태케 하였으나”가 아니라 ‘조산하게 하였으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¹⁸

(3) 이 본문이 제공하는 신학적 진술과 그렇지 않은 것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 본문에서 태아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나 원리를 유추해 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산이나 유산을 유발한 폭력은 비록 그것이 부주의로 말미암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 이상의 그 어떤 다른 신학적 주장이나 진술을 유추해 내는 것은 무리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¹⁹

설령 이 본문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으로부터 현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낙태 행위에 대한 원리를 유추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율법 본문은 우발적 사고로 생긴 낙태 혹은 조산에 대해 가해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문의 성격으로 인해 영국 옥스퍼드의 윤리학자 오도나번(Oliver O'donovan)은 이 사건은 마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²⁰ 헤이즈(Richard Hays)

18 Walter C.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홍용표 역, 『구약성경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95.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녀의 아이들” 즉 ‘엘레테요’(אֵלֵיֶיךָ)가 쓰였는데, 이렇게 복수형이 쓰인 것은 쌍둥이나 혼성 출산 혹은 그 이상의 출산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19 Glen Stassen and David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서울: 대장간, 2011), 77.

20 Oliver O'donovan, *The Christian and The Unborn Child* (Bramcote, Nottingham: Grove Books, 1975), 8, n. 1.

교수나 캐머런(Nigel Cameron) 교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그에 대한 규정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의적 낙태 문제에 대해 원리나 답을 주기에는 부적합한 구절로 해석한다.²¹ 따라서 이 본문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를 낙태 허용 본문으로 삼는 것은 기초가 약한 데에 집을 쌓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고 할 것이다.

V. 인간, 태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 검토

이제 태아의 신분을 다루되 태아의 신분 문제를 좀 더 신학적인 검토와 논의를 규명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회는 인간의 독특성과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일반사회와 학문은 인격성(personhoo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함을 논의하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인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연구해 왔다.²²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반 학문이 말하는 인격성(personhood)의 핵심으로 보고 이것을 매우 중시해 왔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리의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교의적 진술 중의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첫 책 창세기 1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것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창 1:27; 5:3; 9:6)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²¹ Richard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역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1996), 675; Neigel M. de S. Cameron and Pamela F. Sims, *Abortion: the Crisis in Morals and Medicine*, 햇불성경연구소 역, 『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교 의료윤리』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3), 142.

²² David VanDrunen, *Bioethics and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l.: Crossway, 2009), 149.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진술로부터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 명제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교리가 나왔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트키(Bruce Waltke) 교수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한 내용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창 1:26-7)과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부모의 씨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창 5:2-3)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a) 하고 협의하시고, 이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이에 따라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세는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창세기 5장 3절은 대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담이 일백 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창 5:3)는 3절은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을 가리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묘사했다. 여기에 묘사된 형식과 쓰인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묘사하는 장면과 단어를 거의 반복하면서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5장 3절이 말하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은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다름없다. 월트키(Bruce Waltke)는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셋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버지 아담이 지닌 그 형상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²³ 그렇다고 하면, 셋은 부모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²³ Bruce K. Waltke, “Reflections from the Old Testament on Aborti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9 (1976), 12.

주석학자 매튜스(Kenneth A. Mathews)는 “모세는 이 기록과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부모를 통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짐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석한 바 있다.²⁴ 이런 신학적 진술은 창세기 9장 6절의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가운데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 새 인류의 대표 격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게 허락하신 것이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부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라는 것이다(창 9:6). 이 기록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할 수 있을까?

2. 하나님의 형상과 태어나지 않은 태아

셋은 육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부모와 같은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출생 시점일까? 아니면 생명의 씨가 시작되는 잉태 시점일까? 아니면 어떤 기능이 발현되는 특정 시점일까? 이 질문은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답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 태아의 인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신학적인 분석과 유추를 내릴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시편 51편 1-5절까지의 구절이다.

(1)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5)

²⁴ Kenneth A. Mathews, *Genesis 4:27-11:27* (NAC: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310.

다윗은 자신의 범한 엄청난 죄를 깨닫고 난 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시 51:1)라고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한다. 다윗은 “나의 죄악”(2절), “내 죄과”(3절) “내가 주께 범죄하여”(4절)라고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다. 다윗은 자신이 엄청난 죄악을 짓게 된 이유는 자신이 이미 잉태되었던 순간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사롭지 않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기원을 자신이 수정되었던 그 시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자 프레임(John Frame)은 이 구절은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인으로 존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해석한다.²⁵

다윗은 자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상태였고 죄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죄를 좋아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에 간음과 살인과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잉태되어 태아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유는 이 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모친이 죄 가운데서 자신을 잉태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2) 범죄와 인격성

기독교회는 시편의 이 구절을 원죄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구약성경의 지지 구절로 이해해 왔다. 월트키 교수는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시편 51편 5절은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죄의 상태 안에 놓이고 인간의 영적, 도덕적 능력은 이미 태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관념을 뒷받침한다.”²⁶ 이 구절의 진술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태아도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죄는 인격적(personal) 성격을 지닌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어그러진 행동이

25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경직 외 역,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08), 940.

26 Waltke, “Reflections from the Old Testament on Abortion,” 12

아니라 그 이상인 것, 즉 의지와 성향이 발동되어 행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 정통 장로교회는 낙태에 관한 총회 보고서에서 다윗의 고백인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의 죄를 범한 당시 현재의 인격적 성향이 수정 순간으로부터 말미암고, 태아 때와 현재 자신 간에 “인격적 연속성”(personal continuity)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²⁷ 그렇다면 태아도 영아도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지를 악하게 발동하여 죄악된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하려고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의지는 결코 당시의 현상만이 아니고 그가 잉태되어 엄마의 모태에 있던 그 순간부터 그에게 존재했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현재의 죄가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은 태아 때부터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구절과 아울러 이런 진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은 시편 58편 3절이다. 시인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시 58:3)라고 진술한다. 이 진술은 사람이 잉태되어 복중에서 자라는 때부터 결길로, 거짓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 대해 신학자 파올러(Paul Fowler)는 복중에 있는 태아도 죄의 영향에서부터 면제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존재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⁸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태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나면서 결길로 나아갔다는 시인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시인은 이미 태아 때부터 인격성을 지닌 존재 즉 인격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죄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닌 전인의 의지와 성향이 반영된 행위이고 이는 인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자가 인격체임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²⁷ “Report of the Committee to Study the Matter of Abortion” in the Minutes of the Thirty-eight General Assembly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71), 142.

²⁸ Paul B. Fowler, *Abortion: Toward an Evangelical Consensus*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87), 141.

이런 신학적 관점을 통해 태아를 바라보면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성을 지닌 인격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죄의 전가와 대속의 대상으로서의 태아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친 원죄의 전가 교리를 살펴봄으로 태아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죄,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롬 5:12). 기독교회는 이 구절에서 아담의 죄는 아담 이후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교리를 찾아내고 가르쳐 왔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에 그의 죄의 전가의 범위와 대상은 아담 이후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다. 아담의 후손의 범주에서 태아를 배제할 수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를 이 후손의 범주에서 배제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과 범위에서 태아를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루터교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메일랜더(Gilbert Meilaender)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대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인 세상 안에 태아는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태아를 배제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으며 당연히 태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태아도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메일랜더는 태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태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²⁹

3.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소유하고 잃는 것은 아니라 인간 본질

살펴본 바와 같이, 신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종합하여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

²⁹ Meilaender, *Bioethics*, 37.

하셨고 아담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리고 복 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태아도 원죄의 영향에서 배제되지 않는 존재로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죄악을 행하는 성향을 지닌 존재였다. 이를 통해 태아도 인격체임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잃기도 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한 부분이다.³⁰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소유하는 독특한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적인 능력과 기능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인격성의 본질이고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인간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기독교 도덕철학자 미첼(C. Ben Mitchell)은 이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보여주는 무엇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신분의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복중에 있는 초기 태아이든 늦고 노쇠하여 임종 직전에 있는 노인들이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VI. 낙태법 개정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과제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기에 생명권의 주체이며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태아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낙태법을 만들어야 하는 형국이다. 현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보장하는 낙태법을 만들 것을 주문한 현실에서 기독교회는 악보다는

³⁰ Scott Rae and Paul Cox, *Bioethics*, 132.

³¹ C. Ben Mitchell & D. Joy Riley, *Christian Bioethics: A Guide for Pasto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Families* (Nash., Tenn.: B&H Academic, 2014), 55.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안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발의안 분석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의 존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6주 이내 기간을 어떤 사유와 관계없이 낙태의 허용 기간으로 제안한다. 만약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10주까지를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³²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낙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법 제270조를 삭제하기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만약 임신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 임신부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³³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매우 강조하는 안이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낙태죄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한다.³⁴

32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13. 의안번호 5295);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53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3/07/07 접속).

33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4483);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448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P0V1M0Q1Q2G1G6K1G5S0D7V4O2F8 (2023/07/07 접속).

3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27. 의안번호 584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Y0Y1W1L1K8M1J4W3O7F3D1U0C7G6 (2023/07/07 접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낙태 허용의 주 수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안은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³⁵

간략하게 살펴본 바대로,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성경적 신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불만족스럽고 실제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현실은 헌법 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현행 형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절충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덜 악한 차악(lesser evil)에 해당하는 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감안하면 발의된 안들 가운데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기독교적 기준과 가치에 충돌이 가장 덜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해진 법안과 다른 극단은 이은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이다. 조해진 의원의 발의안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허용하라는 현재의 주문을 수용하면서도 그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그 시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독교적 기준과 가치에 크게 부딪히지 않는 안으로 볼 수 있다.

2. 낙태법 개정을 위한 지침

마지막으로,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지녀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위 심장박동 청진이 가능한 시점

³⁵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5. 의안번호 4979);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5. 의안번호 498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W001X1A0M5A1B3Z4N4N4O1T5F4K0 (2023/07/07 접속).

이전의 기간에 한하여서는 어떤 사유든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일명 ‘심장 박동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심장박동 소리가 청취되는 시점을 대략 임신 6주로 보고, 임신 6주를 기준으로 그 이내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들이 이 심장박동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4주간으로 정하여 허용해 주어서 10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형법 개정과 함께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모자보건법과 같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최대화하고 임신부의 건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드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과 그것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 기관을 설치할 것과 아울러 그 기관의 업무 내용과 영역 등도 명시하는 것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이든 집단이 양심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종교와 사상과 신념과 양심에 따라 낙태 시술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를 함께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낙태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동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책임

교회는 법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국민들은 법이 허용한 내용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 그루뎀(Wayne Grudem)은 법이 지닌 “교육적 기능”이라고 말한 바 있다.³⁶ 법이 낙태를 허용하

는 기간을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청소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점점 초기의 태아는 인간 이전의 존재로서 생명권을 보장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과 사회문화는 점점 더 반(反)기독교적인 기준과 가치가 지배하는 현상이 강화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국민과 나라에 흐르는 이런 반기독교적 문화의 흐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문화와 사조에 맞서 대응해 가야 한다. 다행히 현재 한국 사회에는 깨어있고 헌신된 유능한 평신도 전문가들이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대하여 힘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사회에 태아의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낙태법이 개정되도록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36 Wayne Grudem,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98.

[참고문헌]

- Cameron, Neigel M.de S, and Pamela F. Sims. *Abortion: the Crisis in Morals and Medicine*. 햇빛성경연구소 역. 『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 의료윤리』. 서울: 도서출판 햇빛, 1993.
- Cook, David. *Dilemmas of Life: Deciding what's right and what's wrong*.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0.
- Enns, Peter.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xodu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0.
- Fletcher, Joseph. "Four Indicators of Humanness." in *On Moral Medicine: Theological Perspectives in Medical Ethics*. eds., Lammers, Stephen. and Allen Verhey. Grand Rapids, Mich.: W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275-78.
- Fowler, Paul B. *Abortion: Toward an Evangelical Consensus*.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87.
- Frame, John. *The Doctrine of Christian Life*.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2008.
- Frame, John M.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경직 외 역.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08.
- Gillon, Raanan. "To What Do We Have Moral Obligations and Why?" in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3rd. edition. eds. Beauchamp, Tom. and Walters, LeRoy. Belmont, Cali.: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 Grudem, Wayn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 Hays, Richard.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1996.
- Kaiser, Walter C. *Toward Old Testament Ethics*. 홍용표 역. 『구약성경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Mathews, Kenneth A. *Genesis 4:27-11:27*. NAC; Nashville, TN: Broadman & Holmam Publishers, 1996.

- Meilaender, Gilbert. *Bioethics: A primer for Christians*. 3rd ed. Grand Rapids, Mich.: Wm. Eerdmans Pub. Co., 2013.
- Messer, Neil. *SCM Studyguide to Christian Ethics*. 김승호 역, 『현대 기독교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 Mitchell, C. Ben & D. Joy Riley, *Christian Bioethics: A Guide for Pasto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Families*. Nash. Tenn.: B&H Academic, 2014.
- O'donovan, Oliver. "Again: Who is a Person?" in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Ed. J.H. Channer. Exter, England: Paternoster Press, 1985, 125-137.
- _____. *The Christian and The Unborn Child*. Bramcote, Nottingham: Grove Books, 1975.
- Pearcey, Nancy. *Love Thy Body*. 이지혜 역. 『네 몸을 사랑하라』.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 Rachels, James. *The End of Life: Euthanasia and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Rae, Scott. and Paul Cox. *Bioethics: A Christian Approach in a Pluralistic A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_____. *Bioethics*. 김상득 역. 『생명윤리학』. 서울: 살림출판사, 2004.
- "Report of the Committee to Study the Matter of Abortion," in the Minutes of the Thirty-Eight General Assembly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71)
- Stassen, Glen. and David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서울: 대장간, 2011.
- VanDrunen, David. *Bioethics and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l.: Crossway, 2009.
- Waltke, Bruce K. "Reflections from the Old Testament on Aborti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9 (1976), 3-13.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B0%94127\)](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B0%94127)) (2023/07/24 접속).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13. 의안번호 5295)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53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3/07/07 접속).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4483)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12. 의안번호 448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P0V1M0Q1Q2G1G6K1G5S0D7V4O2F8 (2023/07/07 접속).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27. 의안번호 584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Y0Y1W1L1K8M1J4W3O7F3D1U0C7G6 (2023/07/07 접속).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5. 의안번호 4979)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5. 의안번호 498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W0O1X1A0M5A1B3Z4N4N4O1T5F4K0 (2023/07/07 접속).

[Abstract]**The Unborn and the Image of God: A Theological Analysis
for the Amendment of Abortion Law**

Won Ha Shin

(Korea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Christian Ethic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theological examination for the Korean Church concerning the status of an unborn child (or fetu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ordered an amendment to certain provisions in the current penal code that criminalize and punish abortion. This is because the current penal code unilaterally prioritizes the right to life of the unborn, overshadowing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ch deviates from the constitution's spiri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alled for a revision of the penal code to ensure a balanced protection of both the unborn's right to life and the right of women to pursue happiness.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understanding of persons. The Court regards a fetus as a person only from the point when it can live independently outside the womb.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Court's functionalist view of persons. Second, it theologically analyzes that the fetus is not a potential person but a full person. Traditionally, the church has held and proclaimed that human dignity arises from the belief that humans bear the image of God. If a fetus embodies the image of God like any other person, then it must also be recognized as a person. This paper delves into various biblical verses and

teachings to clarify that a fetus is a person bearing the image of God. Lastly, the paper offers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church, which aims to amend the penal code to align more closely with Christian values.

Key Words: Fetus, Fetal Status, Personhood, Image of God, Functionalist View of Human Persons, Substantialist View of Human Persons

